치시켜 긴장작업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(7) 긴장작업시 강선의 파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인장잭 배면에 보호벽을 설치하거나, 현장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8) 긴장작업 완료 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9) 그라우팅 믹서기의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0) 그라우팅 믹서기의 감전방지를 위한 감전예방 조치(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)를 하여야 한다.

## 7.4 추진코



<그림 12> 추진코

- (1) 집중적인 프리스트레스의 작용단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 배치 시공하여 야 한다.
- (2) 추진코와 본체 구조물 연결부는 충분한 전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결방식이어야 한다.
- (3) 추진코의 제작 조립거치시 추진코의 하단과 본체 구조물의 하단이 정확히 동일평면에 있어야 하고, 거더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정밀도를 가